##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89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 허 영·박지원·김병기

박 정・장철민・김영환

김태선 • 위성곤 • 전재수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각 군 참모총장"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 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각 군 본부"를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각 군 검찰단"을 "각 군 검찰단(해병대 검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직할부대"를 "직할부대(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나목 및 다목 중 "각 군 부대"를 각각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부대"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각 군 검찰사무"를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검찰사무"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각 군 소속"을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소속"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소속 군 참모총장"을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34조의9제1항 전단 중 "각 군의"를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로 한다.

제534조의10제2항 중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34조의17제2항 중 "각 군 검찰사무"를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검찰사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해병대 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은 해병대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군 검찰단 보 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해병대 검찰단 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은 해병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	②
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	
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3
<u>각 군 참모총장</u> 이 임명한 법	- <u>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u>
무병과장 각 1명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	
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	
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u>각 군 본부</u> 나	<u>각</u> 군 본부(해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	<u>같다)</u>
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	
다.	

- ② ~ ④ (생 략) 제36조(군검찰단) ① (생 략)
  - ② 국방부검찰단 및 <u>각 군 검</u>
    <u>찰단</u>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③ ④ (생 략)
  -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 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 가. 각 군 본부, 각 군 <u>직할</u>
       <u>부대</u> 소속의 군인, 군무원
       이 피의자인 사건
    - 나. <u>각 군 부대</u>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군검찰단) ① (현행과 같
<u>ㅇ</u> )
②각 군 검
찰단(해병대 검찰단을 포함한
<u>다. 이하 같다)</u>
·
<u>_</u>
· ③ · ④ (현행과 같음)
(1.87) EB)
 1. (현행과 같음)
1. (연영과 崔吉) 2
Z
 ਹੀ ਨੀ
가 <u>직할</u>
부대(해병대사령부 직할부
<u>대를 포함한다)</u>
나. <u>각 군(해병대를 포함한</u>
다) 부대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 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 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 의자인 사건

다. <u>각 군 부대</u>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⑥ ~ ⑧ (생 략)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 장은 <u>각 군 검찰사무</u>의 지휘·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

다. <u>각</u> 군(해병대를 포함한
<u>다) 부대</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
무 지휘·감독)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검찰사무
,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현행
과 같음)
②
가 구/체버데르
<u>각</u> 군(해병대를

 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 소속-----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 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 ② · ③ (생 략)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u>각</u>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 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 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 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 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

<u>다) 소속</u>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
<u>소</u> 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u>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u>각 군(해병대를 포</u>
<u>함한다)의</u>
<u>-</u>
·
· ② (현행과 같음)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

- 격) ① (생 략)
-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u>해당</u>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 감독) ① (생 략)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u>각 군 검</u> <u>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u> 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 ③ (생략)

격) ① (현행과 같음)
②
<u>해당</u>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u> 포함한다)</u>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군(해</u>
병대를 포함한다) 검찰사무
③ (현행과 같음)